

산업재해사고 민사손해배상에서 과실비율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산업재해보상 이후 초과손해와 소송 전 합의·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mparative Negligence Assessment in Civil Damages Claims Arising from Industrial Accidents

—Focusing on Excess Damages Following Workers' Compensation
and Pre-Litigation Settlement and Mediation—

이 상 학*

Lee, Sang-Hak

김 경 제**

Kim, Kyong-Je

목 차

- | | |
|-------------------------------|--------------------------------|
| I. 서론 | IV. 산재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및 실무사례 분석 |
| II. 산재보상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구조 | V. 산재사고 소송 전 합의·조정을 위한 과실비율 판 |
| III. 산재사고에서 과실비율 판단의 주요 요소 | 단기준 정립 방안 |
| | VI. 결론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피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으나,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호비 및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일실수입 등

<https://doi.org/10.35148/ilsilr.2026..64.131>

투고일: 2026. 6. 29. / 심사완료일: 2026. 7. 15. / 게재확정일: 2026. 7. 15.

* 제1저자: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Seoul)

** 교신저자: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 (Seoul)

은 민사상 초과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된 사건에서는 동일한 성질의 손해항목에 대한 공제와 공제 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므로, 과실비율은 초과손해배상청구의 실익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그러나 산재사고는 자동차사고와 달리 사고유형과 작업환경이 다양하고, 사용자와 피재근로자 사이에 지휘·종속관계가 존재한다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현재 산재사고에 관하여는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참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과실비율 판단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당사자들은 책임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예측하기 어렵고, 과실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재보상 이후 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과실비율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검토하고,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 정립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관계를 검토하고, 각 당사자의 과실 판단요소와 도급관계상 책임분담 요소를 분석하였다. 또한 판례 및 실무사례를 통하여 사용자 측 과실이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와 피재근로자 측 과실이 참작되는 경우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바탕으로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과 사용자 측·피재근로자 측 가중·감경요소 및 도급관계상 조정요소를 포함한 「사고유형별 산재사고 기본 과실비율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산재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실비율 판단기준의 필요성을 구체화하고,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활용가능한 실무적 기준 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제안된 판단기준안은 법원을 구속하거나 개별 사건의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책임범위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분쟁 해결과 공평한 책임분담에 기여하기 위한 시론적 참고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산업재해, 산재보험급여, 초과손해배상, 공제 후 과실상계, 손해배상

I. 서론

산업재해¹⁾가 발생하면 피재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그 급여만으로 모든 손해가 전보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위자료와 산재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은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은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기준과 민사상 손해배상 산정기준이 달라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잔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는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이후에도 민사상 초과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다.

산재사고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여러 손해항목을 기초로 산정되지만, 최종 배상액은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특히 산재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된 사건에서는

1) 법률연구회,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사례, 법률정보센터, 2022, 2쪽.

산재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가 이루어지므로,²⁾ 과실비율은 초과손해배상청구의 실익과 범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문제는 산재사고의 경우 자동차 사고와 달리 사고유형별 과실 비율을 예측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자동차사고에서는 유형별 기본 과실 비율과 수정요소를 참고할 수 있는 기준³⁾이 존재하여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도 당사자들이 책임 범위를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재해는 사고유형이 다양하고⁴⁾ 각 사고마다 필요한 안전조치와 책임주체도 다르다. 산업재해는 여러 책임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책임 귀속과 과실비율 판단이 더욱 복잡해진다.⁵⁾

물론 산재사고의 과실비율을 자동차사고처럼 획일적으로 정형화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정형화의 어려움이 소송 전 단계에서 아무런 기준 없이 당사자의 주장에만 맡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축적된 판례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결합하여 사고유형별 판단 요소를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은 피재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 보험자, 변호사, 손해사정사, 공인노무사 등 실무상 관여 주체에게도 각자의 업무범위 안에서 참고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이후 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과실비율이 어떠한 요소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 판례와 실무사례를 토대로 산재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실비율 판단기준의 정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3)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제10차), 손해보험협회, 2023 참조.

4)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2025년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2026, 21쪽.

5) 산재사고에서 문제 되는 책임주체는 사고의 유형과 작업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개인사업주, 원청 또는 도급인, 하청 또는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동료 근로자, 장비 운전자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II. 산재보상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구조

1.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관계

1.1 산재보험급여의 보상범위와 한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각종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⁶⁾를 입은 근로자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급여이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 발생, 인과관계⁷⁾ 등을 요건으로 하지만,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면 피재근로자의 과실⁸⁾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는 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제도와 구별된다.⁹⁾

산재보험급여의 이러한 무과실 책임주의는 피재근로자의 생계보장과 치료보장을 우선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근로자는 사고 발생 이후 치료와 생계의 어려움에 즉시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제도는 재해 발생 원인에 관한 책임의 귀속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귀속을 먼저 확정된 후 보상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중심으로 우선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재근로자의 생활상 위험을 신속하게 보전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산재보험급여는 피재근로자가 입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는 제도는 아니다. 산재보험급여는 법률이 정한 급여항목과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모든 손해항목을 포괄하지 않는다. 예컨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산재보험급여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향후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은 산재보험급여에서 일정 부분 인정될 수 있으나,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기준과 민사상 손해배상의 산정기준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따

6) 법률연구회, 앞의 책, 1쪽.

7)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사법발전재단, 2017, 289쪽.

8) 법률연구회, 앞의 책, 67쪽.

9)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10) 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52 결정.

라 산재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잔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잔여 손해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대상으로 남게 된다.

결국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병존하는 관계에 있다. 산재보험급여는 피재근로자에게 기본적으로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은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는 초과손해를 보충적으로 전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같은¹¹⁾ 성질의 손해항목에서 상호보완 관계에 있는 범위에서는 이중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및 제87조에 따른 책임면제¹²⁾·지급조정·대위 제도를 통하여 조정된다.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대응관계에 있다. 일반적으로 요양급여는 치료비와 같은 적극적인 손해,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장해급여는 장해로 인한 장래 일실수입, 간병급여는 간호비, 장의비는 장례비와 대응되는 손해항목으로 평가된다. 유족급여는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상실수익과 대응관계를 가진다.¹³⁾ 반면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산재보험급여와 직접 대응되는 급여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성질의 손해항목에 한하여 공제¹⁴⁾·조정이 이루어지며, 위자료 또는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되지 않은 잔여 손해에 대하여는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¹⁵⁾ 다만 같은 성질의 손해항목이라 하더라도 보상 대상 기간이나 손해의 범위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상호보완 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조정이 이루어진다.

1.2 산재보상 이후 초과손해배상청구의 필요성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재근로자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산재보험급여는 법정 급여체계에 따라 산정되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인정되는 손해액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피재근

11) 안병민/이광석, 산재사고 보상과 소송실무, 백영사, 2022, 997쪽.

12)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1다203135 판결.

1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14) 안병민/이광석, 위의 책, 997쪽.

1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752 판결.

로자의 연령, 직업, 소득, 가동연한,¹⁶⁾ 여명기간,¹⁷⁾ 노동능력상실률,¹⁸⁾ 향후치료비,¹⁹⁾ 개호비,²⁰⁾ 위자료,²¹⁾ 과실비율²²⁾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지만, 산재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기준에 따라 정형화되어 있다. 이 중 소득,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은 급여자료, 통계자료, 장해진단 또는 신체감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객관화될 수 있다. 반면 과실비율은 사고 발생 경위, 작업환경,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여부, 작업지휘·감독의 정도, 피재근로자의 작업절차 위반 여부, 보호구 착용 여부, 위험 인식 가능성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그리고 초과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영역은 위자료이다. 위자료는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²³⁾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다. 산재사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가 중대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피재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는 매우 크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는 정신적 손해를 별도로 보상하지 않으므로, 위자료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만 전보될 수 있다.

또한 향후치료비와 개호비도 산재보험급여만으로 충분히 전보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산재 요양 과정에서 요양급여가 지급되더라도, 요양 종결 이후 추가 치료, 재활 치료, 보조구 교체, 추가 수술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중증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장기간 또는 평생동안 개호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손해가 산재보험급여로 충분히 보전되지 않는다면, 피재근로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해 잔여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일실수입²⁴⁾ 역시 초과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장해급여는 피재근로자에게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산정되는 장래 일실수입과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민사상 일실수입은 피재근로자의 사고 당시 소득, 직업, 연령, 가동연한,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종합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지급받

16) 안병민/이광석, 위의 책, 1005쪽.

17) 안병민/이광석, 위의 책, 2022, 1009쪽.

18) 안병민/이광석, 위의 책, 1143쪽.

19)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책, 253쪽.

20) 장중운, 손해배상실무 제5판, 진원사, 2021, 221쪽.

21) 장중운, 위의 책, 297쪽.

22)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책, 292쪽.

23) 장중운, 앞의 책, 3-5쪽.

24) 장중운, 위의 책, 330쪽.

있더라도 민사상 일실수입 손해가 더 크게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이 초과손해로 남을 수 있다.

이러한 초과손해배상청구는 소송 단계에서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다. 실무상 많은 산재사고는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합의가 시도된다. 사용자 측은 민사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기업 이미지 훼손, 형사절차나 행정절차와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피재근로자 측도 장기간의 소송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합의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전 합의 과정에서는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의 관계, 산재보험급여 공제 후 과실상계, 초과손해의 범위 등을 정확히 구분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2. 산재사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근거

2.1 「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사용자책임

산재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기본적 근거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산업재해의 경우 사업주 또는 현장 지휘·감독자가 근로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다.²⁵⁾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있는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고, 그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때 성립한다.²⁶⁾ 산재사고에서는 특히 과실과 인과관계가 핵심적으로 문제 된다. 사용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해당 조치를 취하였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 사고 발생 당시 작업환경과 작업지휘·감독 체계가 어떠하였는지 등이 과실과 인과관계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된다.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산재사고 손해배상에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사용자책임은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²⁷⁾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사용자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218690 판결.

26)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924 판결.

27) 김남성, 손해보험과 구상소송실무, 고시아카데미, 2019, 271쪽.

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산재사고에서 피재근로자가 동료 근로자,²⁸⁾ 현장관리자, 장비 운전자 등 다른 피용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그 행위가 사무집행과 관련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산업재해는 개인사업주, 원청 또는 도급인, 하청 또는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동료 근로자, 장비 운전자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각 주체의 지위와 권한, 위험 지배·운영·관리 가능성, 안전조치 이행 정도를 종합하여 책임 귀속과 과실비율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²⁹⁾

다만 산업재해 손해배상책임에서 말하는 사용자 측 책임주체는 단순히 직접 고용 관계에 있는 사업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개인사업주,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³⁰⁾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동료 근로자, 장비 운전자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도급관계가 개입된 산업현장에서는 도급인이 작업장소와 공정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였는지, 수급인³¹⁾이 피재근로자에게 직접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는지, 각 주체가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함께 문제 된다.

다만 각 책임주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서로 다르므로,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이를 구별하여야 한다. 예컨대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서 현장 안전조치와 작업절차 준수를 관리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 반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와 동일한 직접 지휘·명령권을 가진 주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안전관리자와 관련한 책임 판단은 실제 작업지휘 여부가 아니라, 법령상 부여된 보좌·지도·조언, 위험요인 확인, 개선 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역할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³²⁾

한편, 사용자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의 생명·신체·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³³⁾를 부담한다.

28) 이호승, “업무수행상의 과실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제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56쪽.

29) 이동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에 관한 연구—중대재해 판례 분석을 통하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6, 191-192쪽.

30) 조흥학,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신광문화사, 2025, 238쪽.

3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는 수급인을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고 설명한다.

3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0호 참조.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며,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이러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산재 사고에서 사용자의 민사상 책임은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이 함께 검토될 수 있다.

2.2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와 민사상 과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³⁴⁾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며,³⁵⁾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의무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도 기능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는 사고유형별로 구체화된다. 떨어지는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는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 추락방지조치가 문제된다.³⁶⁾ 끼임 위험이 있는 기계·설비 작업에서는 방호장치 설치, 기계 정지 절차, 위험구역 접근 제한 등이 중요하다.³⁷⁾ 차량계 건설기계나 지게차 작업에서는 작업계획서 작성, 신호수 배치, 작업반경 출입통제, 이동경로와 근로자 동선의 분리 등이 검토된다.³⁸⁾ 전기작업에서는 정전조치, 절연용 보호구 착용, 활선작업 절차 준수, 감전 위험에 관한 교육 등이 핵심적인 판단요소가 된다.³⁹⁾

33) 강선희/정진우,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고려법학 제6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322쪽.

34) 이동연, 앞의 논문, 1쪽.

35)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36)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조치), 제44조(안전대의 부착설비), 제45조(지붕위 위험 방지), 제46조(승강설비 설치), 제48조(울타리 설치).

37)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등 위험 방지), 제88조(기계의 동력차단장치),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제93조(방호장치 해체 금지).

3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39조(작업지휘자 지정), 제171조(전도 방지), 제172조(접촉 방지), 제173조(화물적재 시의 조치), 제177조(싱거나 내리는 작업).

39)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19조(정전작업), 제321조(충전전로에서의 전기작업), 제322조(충

사업주가 이러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고소작업에서 추락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근로자를 작업하게 하여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강력한 근거가 된다. 또한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거나 작업반경 출입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부딪힘 또는 끼임 사고의 경우에도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민사상 과실 판단에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여 언제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상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의무 위반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예컨대 법령상 의무 위반이 존재하더라도 그 위반이 사고 발생과 무관하거나, 사고가 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피재근로자의 돌발적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는 사용자 측 과실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피재근로자 측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과도 연결된다.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교육·감독하였음에도 피재근로자가 이를 임의로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다. 반대로 사업주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착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환경을 방치한 경우에는 보호구 미착용을 피재근로자의 과실로 평가하기 어렵다.⁴⁰⁾ 이처럼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는 사용자와 피재근로자 사이의 책임분담을 판단하는 핵심 기준으로 작용한다.

3.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비율의 기능

3.1 손해배상액 산정요소와 과실비율의 관계

산재사고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종합하여 산정된다.⁴¹⁾ 적극적 손해에는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기왕개호비, 향후개

전전로 인근에서의 차량·기계장치 작업), 제323조(절연용 보호구).

4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2항은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41) 장종운, 앞의 책, 728쪽.

호비, 보조구 구입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소극적 손해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재근로자가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일실수입이 포함된다.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의 형태로 배상된다. 다만 산재보험급여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동일한 성질의 손해를 전보하는 범위에서는 이중전보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법」 제80조 및 제87조에 따른 책임면제·지급조정·대위 제도를 통하여 조정된다. 이후 사안에 따라 과실상계 등 책임제한 사유를 반영하여 최종 손해배상액이 산정된다.

이 과정에서 피재근로자의 연령, 직업, 소득, 가동연한, 여명기간, 노동능력상실률, 향후치료비, 간호비, 위자료 등은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된다. 피재근로자의 연령은 장래 가동연한과 여명기간을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직업과 소득은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이 된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사고로 인하여 피재근로자의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감소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요소로서, 일실수입 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향후치료비와 간호비는 의학적 자료와 감정결과에 따라 산정되고, 위자료는 사고의 경위, 장애 정도, 당사자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정리되더라도 최종 손해배상액은 결국 과실비율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과실비율은 산정된 손해 중 어느 범위까지를 사용자 측이 부담하고, 어느 범위까지를 피재근로자 측이 부담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피재근로자의 과실이 높게 인정될수록 사용자 측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줄어들고, 피재근로자의 과실이 낮게 인정될수록 사용자 측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은 커진다.

과실비율은 단순한 산술적 조정 요소가 아니다. 산재사고에서 과실비율은 사용자와 피재근로자 사이의 책임분담에 관한 규범적 평가이다. 사용자가 작업환경을 지배·운영·관리하고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피재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 아래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점, 사고 발생 당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여부, 피재근로자가 위험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과실비율은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법적 판단과 사실적 평가가 결합된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2 과실상계가 최종 배상액에 미치는 영향

「민법」상 과실상계는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하면서 이를 참작하는 제도이다. 산재사고에서도

피재근로자가 작업절차를 위반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위험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산재사고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피재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일반 불법행위 사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⁴²⁾

산재사고에서 과실비율이 중요한 이유는 최종 배상액을 실질적으로 좌우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된 경우에는 먼저 산재보험급여로 전보된 손해와 전보되지 않은 손해를 구분하고, 그 이후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이 최종 배상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게 된다.⁴³⁾ 이때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이 낮게 평가되면 산재보험급여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한 초과손해배상액이 남을 수 있지만, 피재근로자의 과실비율이 높게 평가되면 민사상 추가 배상청구의 실익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과실상계는 단순히 배상액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기능을 넘어, 산재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은 초과손해의 범위와 추가 배상 가능성을 결정하는 기능까지 수행한다. 특히 산재보험급여가 상당한 금액으로 지급된 사건에서는 과실비율이 조금만 달라져도 최종 초과손해배상액이 크게 변동될 수 있다. 따라서 피재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모두 과실비율을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다투게 된다.

소송 전 합의 단계에서도 과실상계의 영향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당사자들이 손해액 총액에 어느 정도 의견을 같이하더라도,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몇 퍼센트로 볼 것인지에 따라 합의금 규모는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사용자 측은 피재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위반하였거나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실비율을 높게 보려 하고, 피재근로자 측은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나 감독 소홀을 이유로 자신의 과실을 낮게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 합의는 쉽게 결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산재사고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는 소송상 판단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소송 전 합의·조정 성패를 좌우하는 실무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실비율 판단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

42) 이호승, 앞의 논문, 7-8쪽.

43)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259152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의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확립” 부분 참조.

들이 소송 전에 합리적으로 책임범위를 조정하고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III. 산재사고에서 과실비율 판단의 주요 요소

1. 사용자 측 과실 판단요소

1.1 안전조치의무 및 현장관리의무 위반 여부

산재사고에서 사용자 측 과실을 판단할 때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할 요소는 사고유형별로 요구되는 안전조치의무와 현장관리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이다. 여기서 사용자 측 책임주체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사고경위에 따라 원청 또는 도급인, 하청 또는 수급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동료 근로자, 장비 운전자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⁴⁴⁾ 다만 이들 모두에게 동일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각 주체의 법적 지위, 업무상 권한, 위험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리 가능성, 작업지휘·감독 여부, 안전조치 이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구별하여 과실 여부와 책임범위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⁴⁵⁾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는 민사상 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기능한다. 사용자가 사고유형별로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측 과실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예컨대 떨어질 위험 작업에서는 추락방지조치, 끼임 위험 작업에서는 방호장치와 기계 정지 절차, 물체와 부딪힐 위험 작업에서는 작업반경 출입통제, 전기작업에서는 정전조치와 감전방지조치 등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처럼 사고유형별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용자 측 과실의 존재와 정도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다만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확인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과실비율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해당 의무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의무였는지, 실제 사고

44)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의 책, 515쪽.

45)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0도15325 판결.

발생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 피재근로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기본적인 안전설비조차 갖추지 않은 경우와, 일정한 안전조치를 하였음에도 피재근로자가 명백히 이를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위험행동을 한 경우는 과실비율을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다.

현장관리의무 위반 여부도 사용자 측 과실 판단에서 중요하다. 사용자는 안전설비를 갖추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작업이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작업지휘자 또는 관리감독자를 배치하였는지, 위험작업 중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였는지, 위험상황이 발견되었을 때 작업중지⁴⁶⁾나 시정조치를 하였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사용자가 위험한 작업방식이나 안전수칙 위반 상태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방치한 경우에는 사용자 측 과실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⁴⁷⁾

다만 현장관리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관리감독자와 안전관리자의 지위와 권한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⁴⁸⁾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지위에서 작업절차 준수와 현장 안전조치를 관리할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⁴⁹⁾ 반면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지위⁵⁰⁾에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와 동일한 직접 지휘·명령권을 가진 주체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⁵¹⁾ 따라서 안전관리자에 대한 과실 판단은 실제 작업지휘 여부가 아니라, 법령상 부여된 보좌·지도·조언, 위험요인 확인, 개선 건의, 안전보건관리체계상 역할 수행 여부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⁵²⁾

결국 안전조치의무 및 현장관리의무 위반 여부는 사용자 측 과실 판단의 출발점이다.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고유형별로 요구되는 기본적인 안전조치와 현장관리의무를 먼저 확인하고, 그 의무 위반의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피재근로자의 행위, 작업환경의 특수성, 각 책임주체의 지위와 권한을 종합하여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46)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내지 제52조.

47)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2도16668 판결.

48)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49)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관리감독자) 제1항.

50) 이상국, 산업안전보건법(I), 대명출판사, 2025, 197쪽.

51) 안전관리자는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명령권을 갖지 않으며, 그 과실 판단은 법령상 부여된 보좌·지도·조언 의무의 실질적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하여야 한다.

52) 이동연, 앞의 논문, 75-76쪽.

1.2 작업계획·위험성평가·안전교육의 적정성

사용자 측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안전교육의 적정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산업현장의 위험작업은 작업순서, 작업 방법, 장비 사용, 근로자 배치, 신호방법, 접근금지 구역, 비상상황 대응방법 등을 사전에 검토한 뒤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인양작업 등은 사전 계획 없이 진행될 경우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작업계획서는 단순한 형식적 문서가 아니라 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 안전관리 수단이다.⁵³⁾ 작업계획서에는 작업내용,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작업방법, 장비의 이동 경로, 근로자의 배치, 신호체계, 떨어짐·끼임·부딪힘 방지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작업내용과 맞지 않거나, 현장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관리의무가 형식적으로만 이행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⁵⁴⁾

위험성평가가 역시 사용자 측 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그 위험의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한 뒤 필요한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절차이다.⁵⁵⁾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작업에 관한 위험성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평가된 위험요인에 대한 개선조치가 시행되었는지, 그 내용이 피재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가 문제 된다.⁵⁶⁾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 측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방호장치 설치, 작업방법 변경, 출입통제, 안전교육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예방 의무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5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1항 제11호에서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며, 같은 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라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54) 광주지방법원 2020. 9. 23. 선고 2019노2188 판결.

55) 정진우, 위험성평가 해설, 중앙경제, 2024, 110-111쪽.

5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4항.

특히 사고 발생 이전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이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았다면 사용자 측 과실은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⁵⁷⁾

안전교육의 실시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도 중요하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⁵⁸⁾ 신규 근로자, 작업 전환 근로자,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안전교육만으로 부족하고, 해당 작업의 구체적 위험과 안전수칙을 설명하는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 측 책임을 경감하기 어렵다. 교육일지에 서명이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사고 작업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거나, 교육내용이 일반적인 안전수칙에 그친 경우에는 적절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떨어짐, 끼임, 부딪힘, 감전 등 중대재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작업에서는 작업 전 교육과 구체적 지시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⁵⁹⁾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도 안전교육과 연결된다. 사업주는 작업의 위험성에 따라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보호구가 해당 작업에 적합한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지, 근로자가 실제로 착용하였는지, 착용 상태를 관리·감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보호구를 단순히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의무가 모두 이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⁶⁰⁾

따라서 작업계획·위험성평가·안전교육의 적정성은 사용자 측 과실 판단에서 핵심적인 요소이다. 특히 위험작업에서 작업계획서나 위험성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 과실을 가중하고, 관련 자료가 존재하더라도 현장 이행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작업계획서, 위험성평가 자료, 안전교육 자료,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자료는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사용자 측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

5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 8. 27. 선고 2020고단234, 2020고단257 판결.

58)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1항 내지 제3항.

59)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26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 [별표 4]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과정 별 교육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60)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제1항.

2. 피해근로자 측 과실 판단 요소

2.1 작업절차 위반 및 보호구 미착용 여부

산재사고에서 피해근로자 측 과실이 문제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정해진 작업절차를 위반하거나 사용자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작업한 경우이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작업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부여된 작업절차와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도 부담한다.⁶¹⁾ 따라서 피해근로자가 명확히 정해진 안전절차를 위반하였고, 그 위반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작업절차 위반은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기계가 완전히 정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비작업을 하거나, 지정된 통로가 아닌 위험구역으로 이동하거나, 신호수의 신호 없이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반경에 들어가거나, 고소작업에서 안전대를 체결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작업 전 점검이나 잠금장치 절차를 생략하거나, 2인 1조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단독으로 작업을 수행한 경우도 작업절차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작업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높은 과실비율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먼저 그 작업절차가 실제로 근로자에게 교육·고지되었는지, 피해근로자가 그 절차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사업주가 안전한 작업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마련하였더라도 현장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절차 위반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해근로자에게 돌리기 어렵다.

또한 산업현장에서는 작업상 필요나 현장 관행 때문에 정식 절차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사용자가 그러한 관행을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피해근로자가 해당 방식으로 작업한 것을 순수한 임의 작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특히 생산 일정이나 작업 속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근로자가 위험한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의 과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호구 미착용도 피해근로자 측 과실이 참작되는 대표적인 사정이다. 사업주가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필요성과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으며, 현장에서 착용을 지시·감독하였음에도 피해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근로자의

61)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보호구 착용이 사고 발생을 예방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보호구 미착용을 피재근로자의 과실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선행 의무 이행 여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보호구가 작업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피재근로자에게 보호구 미착용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사용자가 장기간 방치하였거나, 현장에서 보호구 미착용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면 피재근로자의 과실은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결국 작업절차 위반 및 보호구 미착용 여부는 피재근로자 측 과실 판단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 판단은 사용자의 교육·지시·감독과 결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피재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명백히 독자적이고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행동이었는지를 구별하는 것이 과실비율 판단의 핵심이다.

2.2 위험 인식 가능성과 작업경험의 정도

피재근로자 측 과실을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피재근로자가 사고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인식할 수 없었는지 여부이다.⁶²⁾ 과실상계는 피해자에게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대한 주의의무⁶³⁾ 위반이 있는 경우 이를 참작하는 제도이므로, 피재근로자가 해당 위험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회피하기 어려웠다면 과실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위험 인식 가능성은 피재근로자의 작업경험, 숙련도, 교육 이수 여부, 작업환경의 명확성, 위험의 외관상 식별 가능성 등을 통해 판단된다. 동일한 사고라도 신규 근로자나 해당 작업 경험이 부족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위험 인식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반면 장기간 동일한 작업을 수행한 숙련근로자나 관련 자격을 가진 기술자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을 더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전기작업에서 활선 상태의 위험성은 일반 근로자보다 전기공사 경력이 오래된 숙련근로자가 더 잘 인식할 수 있다. 중량물 인양작업에서도 인양물 아래에 접근하는 행위의 위험성은 경험 있는 근로자라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62) 신동운, 형법총론 제17판, 법문사, 2025, 259-260쪽.

63)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1924 판결.

지게차나 굴착기 작업반경에 접근하는 위험 역시 해당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작업한 근로자라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피재근로자의 작업경험과 위험 인식 가능성은 과실비율을 높이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숙련근로자라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높은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현장의 위험은 근로자가 단순히 주의한다고 해서 모두 회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작업환경 자체가 안전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작업지시가 위험을 수반하였거나,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거나, 작업시간과 업무량의 압박으로 인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면 피재근로자의 숙련도만을 이유로 과실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위험의 성격이 명확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개구부, 작동 중인 기계, 이동 중인 장비, 고압 전선 등 외관상 식별 가능한 위험은 피재근로자가 인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내부 결함, 숨겨진 전기적 위험, 구조물의 강도 부족, 유해물질 노출 위험 등은 피재근로자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이러한 위험은 사용자의 사전 점검과 정보 제공이 없으면 근로자가 회피하기 어려우므로,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제한적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위험 인식 가능성과 작업경험은 피재근로자 측 과실 판단에서 중요한 조정요소이다.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을 마련할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숙련도, 교육 여부, 위험의 명백성, 위험회피 가능성, 작업환경의 통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보다 더 중한 책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3. 도급관계에서의 과실 판단 요소

3.1 도급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가능성

현대 산업현장에서는 원청, 하청, 재하청, 장비업체, 용역업체 등 여러 주체가 하나의 현장에서 동시에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도급관계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피재근로자의 직접 사용자뿐만 아니라 도급인 또는 원청에게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이때 핵심적인 판단요소는 도급인이 사고가 발생한 작업 또는 장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

는지 여부이다.

도급인의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가능성은 형식적인 계약관계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도급인이 단순히 작업 결과만을 요구하였는지, 아니면 작업 장소를 제공하고 작업일정과 작업방법을 조정하였는지, 현장 안전관리 체계를 총괄하였는지,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지시나 감독을 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건설현장처럼 원청 또는 도급인이 전체 공정과 안전관리 체계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운영·관리 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⁶⁴⁾

도급인이 작업 장소의 위험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한 경우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도급인이 관리하는 현장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개구부가 있었음에도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여러 업체가 혼재하여 장비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작업반경 출입통제나 신호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이는 도급인이 해당 위험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기 때문이다.⁶⁵⁾

또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을 실질적으로 지휘하거나 조정한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 된다. 도급인이 작업순서, 작업시간, 장비 사용,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급인 근로자가 이에 따라 작업하였다면, 도급인은 단순한 발주자나 계약상 상대방을 넘어 사고 예방에 관한 실질적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의 직접 지휘 책임과 별도로 도급인의 과실도 인정될 수 있다.

다만 도급인의 책임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작업방법에 관여하지 않았고, 사고가 수급인의 독립적인 작업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도급인이 해당 위험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통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도급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도급인의 과실 판단에서는 계약 형식보다 실제 현장의 지배·운영·관리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3.2 수급인의 직접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 책임

수급인은 자신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거나 지휘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재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부담한다.⁶⁶⁾ 수급인은 소속

64)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65)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1항.

근로자에게 작업내용을 지시하고, 작업방법을 정하며, 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 중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이 이러한 직접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민사상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수급인의 책임은 특히 작업지휘와 관련하여 중요하다. 도급인이 전체 현장을 관리하더라도, 실제로 피해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는 주체는 수급인인 경우가 많다. 수급인이 위험한 작업방법을 지시하거나, 작업계획 없이 근로자를 투입하거나,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거나, 작업 중 위험상황을 감독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발생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수급인에게 인정될 수 있다.

수급인은 소속 근로자의 숙련도, 교육 이수 여부, 작업 적합성 등을 확인할 의무도 부담한다. 특히 신규 근로자나 미숙련 근로자를 위험작업에 투입하는 경우에는 작업 전 교육과 현장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이 작업경험이 부족한 근로자를 충분한 교육 없이 고위험 작업에 투입하였다면,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수급인의 과실은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은 원청 또는 도급인이 제공한 작업환경에 위험이 있는 경우 이를 그대로 수용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작업을 중지할 의무가 있다.⁶⁷⁾ 수급인이 위험을 알고도 소속 근로자를 작업에 투입하였다면 원청의 책임과 별도로 수급인의 책임도 인정될 수 있다. 즉, 원청이 현장을 총괄한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인의 직접 안전관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도급관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근로자와의 관계에서는 도급인과 수급인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책임분담이 달라질 수 있다.⁶⁸⁾ 도급인이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전체 현장 통제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책임이 크게 평가될 수 있고, 수급인이 구체적인 작업지휘와 보호구 관리, 근로자 교육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이 크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을 정립할 때에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책임을 단순히 원청과 하청이라는 명칭만으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 실제 사고 발생 과정에서 누가 작업장소를 지배하였는지, 누가 작업방법을 지시하였는지, 누가 안전조치를 이

66)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참조.

67) 수급인의 작업중지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작업중지권과 연결된다.

68) 성덕근/정상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과실 평가”, 성균관법학 제3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27-28쪽.

행할 수 있었는지, 누가 위험을 인식하고 통제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과실을 배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IV. 산재사고 과실비율에 관한 판례 및 실무사례 분석

1. 사용자 측 과실이 중하게 인정된 사례

1.1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방치 사례

산재사고에서 사용자 측 과실이 중하게 인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고 발생 작업 또는 장소에 객관적으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사용자 측 책임주체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때 사용자 측 책임주체는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주에 한정되지 않고, 사고 작업 또는 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하거나 안전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던 주체를 의미한다. 다만 각 책임주체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서로 다르므로, 과실비율은 형식적 직함이 아니라 실제 작업지휘 여부, 현장 지배·운영·관리 정도, 위험 인식 가능성 및 안전조치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되어야 한다.⁶⁹⁾

판례와 실무사례에서 사용자 측 과실이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는 대체로 사고 장소 자체에 떨어짐·끼임·부딪힘·감전 등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였고,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이다. 예컨대 고소작업에서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안전대 체결설비 등 추락방지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작업환경 안에서 작업할 수밖에 없으므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결여된 작업환경 자체가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끼임·부딪힘·감전 사고에서도 마찬가지로이다. 기계의 위험부위에 방호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작동 중인 설비에 근로자가 접근할 수 있는 상태가 방치된 경우,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반경에 대한 출입통제나 신호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전기

69)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작업에서 정전조치나 감전방지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 과실이 중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⁷⁰⁾ 이러한 사고에서는 근로자의 순간적 부주의보다 사용자가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할 수 있었는지가 더 중요한 판단요소가 된다.

특히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또는 현장 관행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면 피해근로자 측 과실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근로자가 위험한 작업장소에서 작업하였다는 사실은 경우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이 아니라, 오히려 사용자가 위험한 작업환경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근로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작업을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적 지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⁷¹⁾

따라서 안전조치 미이행 및 위험방치 사례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사용자 측 과실을 가중하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첫째, 법령상 요구되는 기본 안전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이다. 둘째, 사용자 측 책임주체가 위험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셋째, 피해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나 현장 관행에 따라 작업한 경우이다. 넷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이다. 다섯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관계수급인들의 혼재작업에서 작업조정이나 출입통제 등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면 피해근로자의 과실상계는 제한되거나 그 비율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1.2 작업계획·안전교육·보호구 관리 미흡 사례

사용자 측 과실이 중하게 인정되는 또 다른 유형은 작업 전 안전관리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졌거나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이다. 산재사고는 사고 순간의 돌발행위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작업 전 위험성평가, 작업계획 수립, 근로자 교육,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현장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판례와 실무사례에서는 사고 당시의 직접 원인뿐만 아니라 사고 전 안전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였는지를 함께 검토한다.

70)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선고 2018나2030366 판결.

71)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작업계획서가 필요한 위험작업임에도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작성되었더라도 실제 작업내용과 맞지 않거나, 현장 근로자에게 공유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 과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중량물 취급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인양작업 등에서는 작업방법, 작업순서, 장비 이동경로, 근로자 배치, 신호방법, 접근금지 구역, 위험방지조치 등이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이러한 계획이 없거나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는 형식적으로만 이행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⁷²⁾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도 사용자 측 과실을 가중하는 요소가 된다. 사고 작업과 관련된 핵심 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에서 누락되었거나,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가 실제 현장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사고 전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이 이미 지적되었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예방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면 사용자 측 과실은 더욱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⁷³⁾

안전교육 미흡도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교육일지에 서명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교육 내용이 사고 작업의 구체적 위험과 직접 관련되어 있었는지, 피해 근로자가 실제로 위험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는지가 검토되어야 한다. 신규 근로자나 위험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게 해당 작업의 위험성, 안전수칙, 보호구 착용 방법, 비상상황 대응방법 등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용자 측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⁷⁴⁾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부실도 사용자 측 과실이 인정되는 주요 유형이다. 사용자는 해당 작업의 위험성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이를 실제로 착용하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해야 한다. 보호구를 단순히 비치하거나 형식적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해당 보호구가 작업에 적합한 것인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는지, 근로자가 착용 방법을 알고 있었는지, 작업 중 착용 여부를 감독하였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⁷⁵⁾

특히 보호구 미착용 사고에서는 사용자 측 과실과 피해근로자 측 과실이 함께 문제 된다. 사용자가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보호구 착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72)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도15004 판결.

73)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3도14674 판결.

74)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2010나111874 판결.

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5. 30. 선고 2016가단9173 판결.

작업환경을 방치하였다면 보호구 미착용을 피재근로자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 반대로 사용자가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을 교육·감독하였음에도 피재근로자가 임의로 착용하지 않았다면 피재근로자 측 과실이 참작될 수 있다. 결국 보호구 미착용은 단독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보호구 지급·교육·감독 체계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작업계획·안전교육·보호구 관리 미흡 사례에서는 해당 작업이 위험작업이었는지, 작업계획서와 위험성평가가 실제로 작성·실시되었는지, 그 내용이 사고작업의 구체적 위험을 반영하였는지, 근로자에게 전달되고 현장에서 이행되었는지, 안전교육과 보호구 지급·착용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위험이 확인되었음에도 작업중지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요소가 미흡한 경우 사용자 측 과실은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

2. 피재근로자 측 과실이 참작된 사례

2.1 작업절차 위반 또는 임의작업 사례

산재사고에서 피재근로자 측 과실이 참작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근로자가 명확한 작업절차를 위반하거나 사용자의 지시 범위를 벗어나 임의로 위험한 작업을 수행한 경우이다. 산재사고에서는 사용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피재근로자도 자신에게 고지된 안전수칙과 작업절차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⁷⁶⁾ 따라서 피재근로자가 위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작업절차를 위반하고, 그 행위가 사고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작업절차 위반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기계 정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정비작업을 하거나, 지정된 통로가 아닌 위험구역으로 이동하거나, 고소작업 중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거나,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반경에 임의로 진입하거나, 전기작업에서 절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피재근로자 측 과실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작업절차 위반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높은 과실비율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과 실무에서는 해당 작업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었는지, 피재근

76)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근로자의 의무).

로자가 그 절차를 교육받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는 작업환경이 마련되어 있었는지, 사용자가 그 위반행위를 알고도 묵인하였는지 등을 함께 고려한다. 즉, 절차 위반의 외형만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준수 가능한 기준으로 작동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⁷⁷⁾

임의작업의 경우에도 피재근로자 측 과실이 문제 된다.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근로자가 작업범위를 벗어나거나, 정해진 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고를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근로자 과실이 참작될 수 있다. 예컨대 지시받지 않은 설비를 점검하거나, 출입금지 구역에 임의로 들어가거나, 원래 예정된 장비나 도구가 아닌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작업이라는 평가 역시 신중해야 한다. 현장에서 그러한 작업방식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고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였다면, 이를 순수한 임의작업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생산 일정이나 작업 속도에 대한 압박 때문에 근로자가 위험한 방식으로 작업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작업절차 위반 또는 임의작업 사례에서 핵심은 피재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묵인 또는 현장 관행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통제와 예견을 벗어난 독자적 위험행동이었는지를 구별하는 데 있다.⁷⁸⁾

2.2 보호구 미착용 또는 위험행동 사례

보호구 미착용은 피재근로자 측 과실이 참작되는 대표적인 사정이다. 사용자가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그 착용 필요성과 사용방법을 교육하였으며, 현장에서 착용을 지시·감독하였음에도 피재근로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특히 보호구 착용이 사고 발생을 예방하거나 손해를 줄일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실비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보호구 미착용을 피재근로자의 과실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선행 의무 이행 여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보호구가 작업에 적합하지 않았거나, 보호구를 착용한 상태로 작업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면 근로자

77) 인천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0나79373 판결.

78)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7263 판결.

에게 보호구 미착용 책임을 묻기 어렵다. 또한 보호구 착용 여부를 사용자가 장기간 방치하였거나, 현장에서 보호구 미착용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면 근로자의 과실은 제한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⁷⁹⁾

위험행동도 피해근로자 측 과실로 참작될 수 있다. 예컨대 출입금지 구역에 임의로 들어가거나, 작동 중인 기계에 접근하거나, 신호수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자신의 작업범위를 벗어나 위험작업을 수행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위험행동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피해근로자의 과실비율은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위험행동의 평가에서도 산업현장의 구조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근로자가 위험구역에 들어간 이유가 작업지시 때문인지, 작업동선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인지, 현장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지에 따라 과실 평가는 달라진다. 예컨대 차량계 건설기계의 작업반경에 근로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동선과 장비 이동경로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고 신호수나 유도자가 배치되지 않았다면 이를 전적으로 피해근로자의 부주의로 볼 수 없다.⁸⁰⁾

반대로 피해근로자가 명확한 위험을 인식하고도 스스로 안전수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실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 특히 장기간 동일 작업에 종사한 숙련근로자가 안전장치를 임의로 해제하거나, 절연보호구를 벗고 활선작업을 하거나, 중량물 아래에 임의로 접근한 경우에는 그 위험 인식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근로자의 행위는 단순한 순간적 부주의를 넘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⁸¹⁾

결국 보호구 미착용 또는 위험행동 사례에서는 피해근로자의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가 어떤 작업환경과 지휘·감독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이를 산재사고 과실비율 기준에 반영할 경우, 보호구 미착용이나 위험행동을 일률적 과실요소로 보지 않고, 사용자 측 보호구 지급·교육·감독 여부, 현장 관행, 작업지시 또는 묵인 여부와 결합하여 가중 또는 감경요소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시사점

위 판례 및 실무사례를 종합하면, 산재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결과만으로 정해지

7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 6. 19. 선고 2016가단36696 판결.

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가단5094658 판결.

81)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460 판결.

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전후의 구체적 작업경위,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이행 여부, 피재근로자의 작업행위, 작업환경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사용자 측 과실이 중하게 평가되는 경우는 사고 장소 또는 작업방식 자체에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다. 떨어짐·끼임·부딪힘·감전 등 사고유형별로 요구되는 방호조치, 출입통제, 작업지휘, 감전방지조치 등이 마련되지 않았거나, 위험이 사전에 지적되었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 과실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다.

또한 판례는 작업 전 안전관리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였는지를 중요하게 본다.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지 않았거나 실제 작업내용과 맞지 않는 경우,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만 이루어진 경우, 안전교육이 구체적 작업위험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보호구 지급과 착용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 측 안전관리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산재사고에서 사용자 측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문서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그 내용이 실제 작업에 반영되었는지, 근로자에게 전달되었는지, 현장에서 이행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반면 피재근로자의 작업절차 위반이나 보호구 미착용이 있었다고 하여 곧바로 높은 과실비율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재근로자의 행위가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 묵인, 현장 관행 또는 작업상 불가피한 사정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통제와 예견가능성⁸²⁾을 벗어난 독자적 위험행동이었는지를 구별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마련하지 않았거나 보호구 착용이 사실상 어려운 작업환경을 방치하였다면, 보호구 미착용이나 위험한 장소에서의 작업을 피재근로자의 과실로만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산재사고의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는 사용자 측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재근로자 측 부주의를 대립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양자가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어떠한 방식으로 기여하였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이러한 판례 및 실무사례의 경향은 산재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실상계 기준의 정립, 사고유형별 기본 판단범위의 설정, 가중·감경요소 및 도급관계상 조정요소를 포함한 과실비율 판단기준

82) 박태신, “산재소송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요건사실 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46-47쪽.

표의 마련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시사점을 바탕으로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의 정립 방안을 검토한다.

V. 산재사고 소송 전 합의·조정을 위한 과실비율 판단기준 정립 방안

1. 산재사고 특수성을 반영한 과실상계 기준의 정립

앞서 살펴본 판례 및 실무 사례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이하에서는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의 정립 방안을 검토한다.

산재사고의 과실비율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산업재해가 일반 불법행위나 자동차사고와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진다는 점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 자동차사고는 대체로 독립된 교통참여자 사이에서 발생하고, 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 대등한 주체로 평가된다. 반면 산업재해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피재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사용자와 피재근로자를 법률상·사실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당사자로만 보기 어렵다.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제공한 작업장소, 작업설비, 작업도구, 작업방식, 작업일정 안에서 업무를 수행한다. 사용자 측은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작업순서를 정하며, 작업방법을 지시하고, 안전조치를 마련하며,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다. 반면 피재근로자는 현장에서 위험을 인식하더라도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일용직 근로자, 하청 근로자, 신규 근로자, 미숙련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현장관리자의 지시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산재사고에서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보호구 미착용, 작업절차 위반, 위험한 작업방식 선택 여부만을 기계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행위가 사용자의 지시, 묵인, 작업 관행 또는 불충분한 안전조치 아래 이루어진 것인지, 피재근로자가 실제로 위험을 인식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지, 작업을 중지하거나 거부할 현실적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피재근로자의 과실을 전면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피재근로자가 명확한

작업절차를 알고도 위반하였거나,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받고도 임의로 착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자의 지시와 무관하게 위험구역에 진입하여 사고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사용자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 작업지시 또는 묵인 여부, 작업환경의 위험성, 피재근로자의 위험 인식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산재사고 과실상계 기준은 사용자 측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정도와 피재근로자의 위험회피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유형별 위험 특성, 사용자의 지배·운영·관리 가능성, 작업계획·위험성평가·안전교육의 실질성,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피재근로자의 작업경험과 위험 인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준은 산재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책임범위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기초가 된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산재사고의 과실비율을 단일한 수치로 정형화하기보다, 사고유형별 기본 판단범위를 설정하고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2. 사고유형별 기본 판단범위의 설정과 한정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사고유형별로 기본 판단범위를 설정하되, 그 범위가 획일적·확정적 수치로 작용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는 자동차사고와 달리 사고유형과 작업환경이 다양하므로 일률적 비율을 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모든 사건을 개별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책임범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고유형별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판단요소를 정리하고, 일정한 기본 판단범위 또는 기본 출발점을 제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기본 판단범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축적된 판례와 실무사례를 사고유형별로 분석해야 한다. 법원이 떨어짐 사고, 끼임 사고, 부딪힘 사고, 감전 사고 등에서 어떠한 요소를 중시하였는지 검토하고, 사용자 측 과실과 피재근로자 측 과실이 각각 어느 정도로 평가되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때 단순히 과실비율 수치만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경위, 사용자의 안전조치 위반 내용, 피재근로자의 작업절차 위반 여부, 도급관계, 작업환경 등을 함께 분석해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기본 판단범위 설정의 중요한 객관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해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안전조치가 무엇이었는지, 그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그 위반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사용자 측 과실의 기본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반대로 사용자가 핵심 안전 조치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고, 피재근로자가 명백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재근로자 측 과실을 보다 크게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산재사고의 특성상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은 개별 사건의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수치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기본 과실비율은 해당 사고유형에서 통상적으로 문제 되는 안전조치의무와 대표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설정한 1차적 출발점으로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사용자의 안전조치 이행 정도, 피재근로자의 작업절차 위반 정도, 위험 인식 및 회피 가능성, 작업지시 또는 묵인 여부, 도급관계 등 개별 사정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기본비율을 제시하더라도, 그 비율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마찬가지로 수정요소가 반영되기 전의 참고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은 소송 전 합의·조정 of 출발점으로 기능한다. 당사자는 해당 사고유형에서 요구되는 안전조치와 과실 판단요소를 확인한 다음, 구체적인 가중·감경요소를 반영하여 책임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비율은 법원을 구속하거나 개별 사건의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소송 전 단계에서 책임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예측하기 위한 시론적 참고기준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3.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표의 설정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표는 사고유형별 기본 판단범위와 가중·감경요소를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산업재해는 떨어짐, 끼임, 부딪힘, 감전, 물체에 맞음, 무너짐, 질식, 화재·폭발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각 사고유형마다 요구되는 안전조치와 과실 판단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의 일반 기준만으로 모든 산재사고의 과실비율을 판단하려고 하면 개별 사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은 개별 판결에서 인정된 과실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산출한 통계적 수치가 아니다. 이는 앞서 검토한 판례 및 실무사례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책임평가의 경향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사고유형별 핵심 안전조치의무를 기초로 설정한 규범적·시론적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조치의 내용과 그 이행 여부, 사용자 측의 위험에 대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가능성, 안전조치의무 위반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 피재근로자의 위험 인식 및 회피 가능성, 작업절차 위반이나 독자적 위험행동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설정하였다. 핵심 안전조치가 전면적으로 이행되지 않았고 그 의무 위반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된 유형에서는 사용자 측 과실을 높게 설정하였으며, 사용자가 주요 안전조치를 상당 부분 이행하였음에도 피재근로자가 명확한 작업절차를 위반하거나 독자적인 위험행동을 한 유형에서는 피재근로자 측 과실을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하였다.

다만 아래의 비율은 개별 사건의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기준이 아니라, 대표적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소송 전 합의·조정외의 1차적 출발점이다.

〈표 V-1〉 사고유형별 산재사고 기본 과실비율 판단기준안

구분	사고유형 및 기본상황	기본 과실비율	주요 판단 근거
1	추락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단부·지붕·비계 등에서 발생한 떨어짐 사고	90 : 10	안전난간, 작업발판, 덮개, 추락방호망 등 기본적인 추락방지조치 미실시
2	추락방호시설은 설치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안전대 체결 또는 작업절차를 위반한 떨어짐 사고	70 : 30	사용자의 일부 안전조치 이행과 근로자의 명백한 안전수칙 위반이 함께 존재
3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거나 기능이 정지된 기계·설비에서 발생한 끼임·절단 사고	90 : 10	방호덮개, 인터록, 비상정지장치 등 핵심 방호조치 미실시
4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치·작동하였으나 근로자가 임의로 이를 해제하거나 위험구역에 진입한 끼임 사고	60 : 40	사용자의 기본 안전조치 이행과 근로자의 적극적인 안전장치 무력화가 함께 존재
5	차량계 건설기계·지게차의 작업구역에 출입통제·유도자 배치·동선분리 없이 발생한 충돌·협착 사고	85 : 15	차량과 근로자의 혼재작업 및 사업주의 작업구역 통제외의무 위반
6	출입금지구역과 이동통로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으나 근로자가 작업지시 없이 임의로 위험구역에 진입한 차량계 사고	60 : 40	사용자의 통제조치와 근로자의 명백한 출입절차 위반이 함께 존재
7	중량물 인양작업에서 작업계획서·신호수·출입통제 또는 인양기구 점검 없이 발생한 낙하·맞음 사고	90 : 10	중량물 취급작업의 핵심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이행되지 않음
8	작업계획과 신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근로자가 인양물 아래에 임의로 진입한 낙하·맞음 사고	65 : 35	사용자의 안전관리와 근로자의 위험구역 진입행위가 함께 사고에 기여
9	전로 차단·검전·접지·절연용 보호구 없이 실시한 전기작업 중 발생한 감전사고	95 : 5	감전방지를 위한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안전조치 미실시
10	전원차단과 보호구 지급이 이루어졌으나 근로자가 임의로 전원을 투입하거나 절연용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은 감전사고	65 : 35	사용자의 기본조치 이행과 근로자의 고의에 가까운 안전절차 위반이 함께 존재

구분	사고유형 및 기본상황	기본 과실비율	주요 판단 근거
11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송기마스크 지급 없이 발생한 밀폐공간 질식사고	95 : 5	밀폐공간 작업의 핵심 안전조치가 전면적으로 미이행됨
12	밀폐공간 작업절차와 출입통제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근로자가 승인 없이 단독으로 진입한 질식사고	70 : 30	사용자의 관리조치가 있었으나 출입통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책임도 존재
13	가연성 물질 제거, 환기, 화기작업허가, 가스측정 없이 실시한 용접·용단작업 중 화재·폭발사고	90 : 10	화재·폭발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작업통제가 전반적으로 미 실시됨
14	화기작업 절차와 소화설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근로자가 승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임의로 화기작업을 한 사고	65 : 35	사용자의 관리체계와 근로자의 작업절차 위반이 함께 사고에 기여
15	작업장 바닥의 기름·물·장애물·개구부 등을 방치하여 발생한 넘어짐 사고	80 : 20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 등 사용자의 작업환경 관리의무 위반
16	통로와 바닥상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으나 근로자가 뛰거나 휴대전화를 보면서 이동하다 발생한 넘어짐 사고	40 : 60	작업환경상 위험보다 근로자의 일상적인 부주의가 사고의 주된 원인
17	적재물의 고정·지지 또는 적정 적재높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붕괴·도괴 사고	90 : 10	적재·해체·굴착작업에 관한 구조적 안전조치 미 실시
18	적재상태가 정상적이었으나 근로자가 작업지시 없이 지지대를 제거하거나 적재물을 임의로 건드려 발생한 사고	60 : 40	사용자의 현장관리책임과 근로자의 직접적인 위험행위가 함께 존재

※ 아래 비율은 **사용자 측 과실 : 피재근로자 측 과실**을 의미한다.

〈표 V-2〉 사용자 측 과실의 가중요소

가중요소	조정범위
법령상 핵심 안전조치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경우	+10%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고가 과거에 반복되었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10%
위험성평가에서 해당 위험이 확인되었음에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작업계획서 또는 안전작업절차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10%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거나 해당 작업에 관한 교육이 누락된 경우	+5%
위험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10%
작업중지 요청이나 시정 요구를 받고도 작업을 계속하게 한 경우	+10%
신규근로자·고령자·외국인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추가 교육이나 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5~10%
도급인이 작업장과 위험요인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필요한 조정을 하지 않은 경우	+5~10%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착용이 불가능한 작업환경을 방치한 경우	+5~10%

※ 다음 사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 측 과실을 기본비율에서 **각 5~10% 가중**할 수 있다.

〈표 V-3〉 사용자 측 과실의 감경요소

감경요소	조정범위
법령상 요구되는 방호시설과 안전장치를 적정하게 설치·유지한 경우	-5~10%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실시한 경우	-5%
작업계획서와 작업절차를 마련하고 근로자에게 실질적으로 주지시킨 경우	-5%

감경요소	조정범위
적정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 경우	-5%
관리감독자 또는 유도자·신호수를 적정하게 배치한 경우	-5%
근로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안전장치를 무단 해제하거나 작업방법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5~10%
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돌발적·이례적인 근로자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	-10%

※ 다음 사정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사용자 측 과실을 기본비율에서 **각 5~10% 감경**할 수 있다.

〈표 V-4〉 피재근로자 측 과실의 가중요소

가중요소	조정범위
반복적으로 교육받은 명백한 안전작업절차를 위반한 경우	+5~10%
지급된 보호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	+5%
방호장치·인터록·안전센서 등을 임의로 해제한 경우	+10%
출입금지구역 또는 중장비 작업반경에 임의로 진입한 경우	+5~10%
작업지시와 다른 작업을 독단적으로 실시한 경우	+5~10%
충분한 경험과 숙련도를 가진 근로자가 명백한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작업을 강행한 경우	+5~10%
음주 또는 업무와 무관한 행동이 사고 발생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경우	+10%
관리감독자의 작업중지 또는 대피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10%

※ 다음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피재근로자 측 과실을 기본비율에서 **각 5~10% 가중**할 수 있다.

〈표 V-5〉 피재근로자 측 과실의 감경요소

감경요소	조정범위
사용자의 구체적인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한 경우	-5~10%
위험한 작업방법이 사업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우	-5~10%
관리감독자가 위험한 작업을 묵인하거나 직접 지휘한 경우	-10%
안전교육을 받지 못해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경우	-5~10%
신규근로자·미숙련자·외국인근로자로서 작업위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어려웠던 경우	-5~10%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았거나 현실적으로 착용할 수 없는 작업환경이었던 경우	-10%
작업을 거부하거나 중지하기 어려운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던 경우	-5~10%
긴급상황에서 동료를 구조하거나 사업주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동한 경우	-5~10%
위험이 외관상 쉽게 발견되거나 예측되기 어려웠던 경우	-5~10%

※ 다음 사정이 있는 경우 피재근로자 측 과실을 기본비율에서 **각 5~10% 감경**하거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최종 과실비율은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을 출발점으로 하여 사용자 측 및 피재근로자 측의 가중·감경요소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이를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최종 사용자 측 과실비율 = 사고유형별 사용자 측 기본 과실비율 + 사용자 측 과실 가중분 - 사용자 측 과실 감경분 - 피재근로자 측 과실 가중분 + 피재근로자 측 과실 감경분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를 사용자 측 과실의 가중요소와 피재근로자 측 과실의 감경요소에 중복하여 반영해서는 안 된다. 또한 여러 수정요소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계적으로 합산하기보다는, 각 사정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와 당사자의 위험 지배·인식·회피 가능성을 종합하여 최종 과실비율을 정하여야 한다.

〈표 V-6〉 피재근로자 측 과실의 단계별 판단범위

유형	피재근로자 측 과실 판단범위
사용자의 핵심 안전조치가 전면적으로 결여된 경우	0~10%
사용자의 안전조치가 미흡하고 피재근로자의 부주의가 일부 결합된 경우	10~30%
사용자의 안전조치 미흡과 피재근로자의 작업절차 위반이 함께 사고에 기여한 경우	30~40%
사용자가 상당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였으나 피재근로자가 명백한 작업절차를 위반한 경우	40~60%
사용자가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였고 피재근로자의 돌발적·독자적 행위가 사고의 주된 원인인 경우	60% 이상

〈표 V-7〉 도급관계에서의 책임배분 판단요소

책임주체	주요 판단요소
도급인	작업장 지배·관리 여부, 공통 안전시설 설치·관리, 혼재작업 조정, 출입통제, 위험정보 제공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지시,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작업절차 수립, 현장감독
장비업체·운전자	장비 점검, 조작상 과실, 작업반경 확인, 신호수 지시 준수, 운전자의 주의의무
피재근로자 소속 사업주	근로자 배치의 적정성, 작업능력 확인, 특별교육, 작업지시 및 관리감독

도급·하도급 관계가 개입된 경우에는 먼저 피재근로자와 사용자 측 전체 사이의 과실비율을 정한 다음, 도급인의 작업장 지배·운영·관리 가능성, 수급인의 직접적인 작업지휘 및 안전관리 책임, 장비업체 또는 장비 운전자의 조작상 과실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 측 책임주체 사이의 내부 책임비율을 별도로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기준안은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사고유형별 안전조치의무와 과실 판단요소를 확인하고, 책임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예측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용될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된 사건에서는 공제 후 과실상계 구조상 과실비율이 최종 초과손해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합의금 산정과 조정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기능할 수 있다.

다만 본 판단기준안은 법원을 구속하거나 개별 사건의 최종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최종 과실비율은 개별 사건의 작업환경, 사고 경위, 안전조치 이행 정도, 피재근로자의 행위, 위험에 대한 각 당사자의 지배·인식·회피 가능성 및 도급관계의 구조를 종합하여 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기준안은 향후 판례와 실무사례의 축적에 따라 계속 검증·보완될 필요가 있는 시론적 기준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VI. 결론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피재근로자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산재보험급여는 피재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보상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회보험적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여 피재근로자 또는 유족의 손해가 모두 전보되는 것은 아니다. 위자료, 향후치료비, 개호비, 산재보험급여로 보전되지 않는 일일수입 등은 여전히 민사상 초과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남는다.

산재보상 이후 초과손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에서는 손해액 산정뿐만 아니라 과실비율 판단이 핵심적인 의미를 가진다. 특히 산재보험급여가 이미 지급된 사건에서는 동일한 성질의 손해항목에 대한 공제와 공제 후 과실상계가 문제 되므로, 과실비율은 최종 배상액과 초과손해배상청구의 실익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산재사고에서 과실비율을 판단할 때에는 사용자 측 안전조치의무 위반, 작업계획·위험성평가·안전교육의 실질성, 보호구 지급 및 착용관리, 피재근로자의 작업절차 위반 여부, 위험 인식 가능성, 도급관계상 지배·운영·관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판례 및 실무사례에서도 산재사고의 과실비율은 사고 결과관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고유형별 위험 특성, 작업환경, 사용자의 지시·묵인 여부, 피재근로자의 행위가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송 전 합의·조정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산재사고의 특수성을 반영한 과실상계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고유형별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안전조치의무와 피해근로자 측 고려요소를 정리하여 기본 과실비율을 설정하되, 이를 개별 사건의 확정적인 최종 과실비율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이를 반영하여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과 사용자 측·피해근로자 측 가중·감경요소를 포함한 「사고유형별 산재사고 기본 과실비율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고유형별 기본 과실비율, 주요 판단 근거, 사용자 측과 피해근로자 측의 가중·감경요소 및 도급관계상 조정요소를 포함한 판단기준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판단기준안은 법원을 구속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소송 전 단계에서 책임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예측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기능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표는 법원을 구속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 피해근로자 측과 사용자 측 당사자, 보험자, 변호사 및 관련 실무자가 소송 전 단계에서 책임범위와 손해배상액을 예측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기능하여야 한다.

아울러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표를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피해근로자의 보호구 미착용이나 작업절차 위반만을 단편적으로 강조하여 사용자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책임이 부당하게 경감되어서도 안 된다. 결국 산재사고 과실비율 판단기준의 정립은 피해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공평한 책임분담을 실현하고, 소송 전 합리적 합의·조정을 가능하게 하며, 산재사고 손해배상 실무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김남성, 손해보험과 구상소송실무, 고시아카데미, 2019.
- 법률연구회, 산재사고 유형별 과실상계사례, 법률정보센터, 2022.
-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소송실무(교통·산재), 사법발전재단, 2017.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제10차), 손해보험협회, 2023.
- 신동운, 형법총론 제17판, 법문사, 2025.
- 안병민/이광석, 산재사고 보상과 소송실무, 백영사, 2022.
- 이상국, 산업안전보건법(I), 대명출판사, 2025.
- 장종운, 손해배상실무 제5판, 진원사, 2021.
- 정진우, 위험성평가 해설, 중앙경제, 2024.
- 조흠학, 산업안전보건법 해설, 신광문화사, 2025.

2. 학술지

- 강선희/정진우, “사내하도급근로자에 대한 도급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산안법상 안전보호조치의무”, 고려법학 제64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2, 319-365쪽.
- 박태신, “산재소송에 있어서 안전배려의무와 관련한 요건사실 등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3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33-63쪽.
- 성덕근/정상현,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액 산정과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과실 평가”, 성균관법학 제37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5, 27-67쪽.

3. 학위논문

- 이동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의무에 관한 연구 -중대재해 판례 분석을 통하여-”, 동아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6.
- 이호승, “업무수행상의 과실에 대한 근로자의 책임 제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9.

4. 기타자료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2025년 산업재해현황, 고용노동부, 2026.

[Abstract]

A Study on Comparative Negligence Assessment in Civil Damages Claims Arising from Industrial Accidents

—Focusing on Excess Damages Following Workers' Compensation and Pre-Litigation Settlement and Mediation—

Lee, Sang-Hak^{*}

Kim, Kyong-Je^{**}

When an industrial accident occurs, an injured worker may receiv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under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owever, consolation money, future medical expenses, nursing care expenses, and loss of earnings not covered by such insurance benefits may still remain subject to a civil claim for compensation for excess damages. In particular, wher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have already been paid, deduction for overlapping items of the same nature and comparative negligence after deduction become relevant. Therefore, the negligence ratio serves as a key factor in determining the practical benefit and scope of a claim for excess damages.

Unlike automobile accidents, industrial accidents involve diverse accident types and working environments, and they are characterized by a relationship of direction and subordin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the injured worker. Nevertheless, there is currently no sufficiently systematic standard for determining negligence ratios in industrial accident cases that can be used at the pre-litigation settlement or mediation stage. As a result, the parties often have difficulty predicting the scope of liability and the amount of damages, and disputes over negligence ratios tend to recur.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the determination of negligence ratios in civil compensation claims for excess damages afte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Seoul)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College of law, Dongguk University (Seoul)

and to propose a framework for establishing standards that may be used in pre-litigation settlement and mediation. For this purpose, this study reviews the relationship betwee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and civil liability for damages, and analyzes the negligence factors of each party as well as the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in subcontracting relationships.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cases in which the employer's negligence was evaluated as significant and cases in which the injured worker's negligence was taken into account through judicial precedents and practical cases. Based on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such analysi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for constructing a negligence ratio determination table that includes basic ranges of assessment by accident type and aggravating or mitigating factor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presenting the need for negligence ratio determination standards that reflect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accidents and in providing a practical foundation for standards that can be used in pre-litigation settlement and mediation. The proposed standards are not intended to bind courts as absolute rules, but rather to function as reference criteria that enhance predictability regarding the scope of liability and the amount of damages, and that contribute to reasonable dispute resolution and fair allocation of responsibility.

[Key Words] Industrial Accid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Benefits, Compensation for Excess Damages, Comparative Negligence after Deduction, Damages